

연계전공 소개

연계전공은 모집단위에는 없지만 두 개 이상의 학부(과) 전공이 연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전공이다.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전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,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복수학위 취득 제도이다.

- 전공분야 : 건강운동학(2020학년도 이후 신규 신청 불가), 공연예술콘텐츠, 미디어콘텐츠, 외식산업경영, 운동재활, 정원디자인, 휴먼ICT, 한류콘텐츠
- 신청자격 : 2학기 수료자, 30학점 이상의 평균 2.5이상의 재학생
- 편입생은 1학기 수료 이후 신청 가능
- 이수학점

입학년도	졸업학점	단일전공 전공학점	부전공 학점		복수전공 학점		연계전공 학점		융합전공 학점	
			주전공	부전공	주전공	복수	주전공	연계	주전공	융합
2017	130	75	54	21	39	36	39	36	0	75
2016	135	75	54	21	42	42	42	36	0	75
2015	135	75	54	21	42	42	42	36	0	75
2014	135	75	54	21	42	42	42	36	0	75

- ① 간호학과는 135 그대로, 건축학과 및 약학과 그대로
- ② 부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신청해도 기준학점을 그대로 이수하여야 함.
- ③ 졸업학점=전공+교양(교필/교선)+일반학점

* 전공 이수학점은 2017학번을 기준으로 42학점(2017학번 이전), 39학점(2017학번 이후), 으로 원칙으로 하되, 학교의 내규가 따로 있는 학과는 학과 내규를 적용한다.

- 세부규정
 - ① 연계전공은 1개의 전공만 신청가능
 - ② 연계전공도 학위기 수여

- ③ 중도포기 시 취득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(단, 학과 전공과목을 연계전공으로 취득했을시, 전공과목으로 인정)
- ④ 전공별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에 한 해서만 연계전공으로 인정(공연예술콘텐츠 연계전공 학생이 정원 디자인 교육과정 교과목을 들었을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)
- ⑤ 매 학기 말에 이수구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 이수구분을 연계전공으로 변경

• 신청방법 : SU-wings신청→책임교수 심사→연계전공 담당자 승인

• 연계전공 주임교수 명단

연계전공명	책임교수	책임교수 전화번호	책임교수 사무실
공연예술콘텐츠	박승순	3399-1686	체육관 305호
미디어콘텐츠	김영안	3399-1831	제2실습관 106호
외식산업경영	윤미은	3399-1658	제2과학관 404호
운동재활	이병희	3399-1634	제3과학관 112호
정원디자인	류병열	3391-1733	제2과학관 503호
건강운동학	유재현	3399-1670	에스라관 307호
휴먼ICT	최성욱	3399-1556	바울관 212호
한류콘텐츠	음영철	3399-1859	에스라관 110호

• 연계전공 담당자 전화 : 02)3399-3356

연계전공 운영지침

제1조 (목적)

이 지침은 학칙 제 36조의 2에 의하여 삼육대학교 연계전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연계전공이라 함은 모집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, 2개 이상의 학부,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.

제3조 (연계전공 개설)

- ① 2개 이상의 학부(학과, 전공)에 속해 있는 2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개발하고, 참여 학과(부)의 협의를 거쳐, 참여 학과(부) 교수 각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설치 발의 한다.
- ② 참여할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임교수를 선임한다.
- ③ 연계전공 개설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운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1. 전공명칭 및 참여 전공
 2. 전공개요 및 개설 목적
 3. 배출 인력의 진로와 진출분야, 관련 자격증 취득
 4. 교육내용 및 연계전공 운영 기본계획
 5. 연계전공 교육과정 편성표
 6. 참여교수 명단 및 연계전공운영위원회 구성 사항
 7. 연계전공 이수 시 졸업요건(졸업시험, 논문) 및 학위명
 8. 참여 학과 회의록
- ④ 연계전공 신설 신청은 연계전공 활성화 차원에서 매 학년도 말 신청할 수 있다.
- ⑤ 개발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승인한다.

제4조 (연계전공 폐지)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계전공은 폐지 대상이 되며,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.

1. 4학기 연속 신청학생이 없거나 또는 최근 3년간 연계전공 이수자가 20명 미만일 때
2. 기타 연계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
3. 폐설 된 연계전공은 이수신청자가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운영한다.

제5조 (연계전공 운영)

연계전공운영은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배정한다.

제6조 (교과목 편성)

- ① 연계전공과목 편성은 연계전공에 참여한 교수들의 소속 학부(학과, 전공)에 개설된 과목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개설 과목은 학과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되. 참여 학과간 최소 1과목(3학점)이상을 교차 수강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. 또한 타 학부(학과, 전공)과목도 연계전공의 과목으로 지정하여 구성할 수

있으며 참여 학과(부)에 직접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성격의 과목은 교양영역에 연계전공 과목으로 편성 할 수 있다.

- ② 연계전공에 참여하는 학부(학과, 전공)에서는 연계전공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3과목(9학점)까지 교육 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부(학과, 전공)별로 추가 교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.
- ③ 연계전공으로 개설하는 과목은 제1전공의 개설시기(학년, 학기)와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한다.
- ④ 개설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전공교과목의 폐강기준에 따른다.

제7조 (연계전공 이수신청)

- ① 연계전공 이수신청은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, 매학기 다전공 신청기간에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(SU-WINGs)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신청자는 학사지원센터의 승인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 (신청 및 절차)

-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전공 신청기간에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(SU-WINGs)를 통해 신청 한다.
- ② 교무처장은 연계전공 이수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속 학부(과)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에 연계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이수한 학점은 소급하여 연계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, 인정 기간은 연계전공 신청 1년전 까지만 허용한다.
- ④ 연계전공 이수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신청학부(학과, 전공)의 제한은 없다.

제9조 (학점이수) 연계전공의 학점이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제1전공의 졸업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연계전공 이수자는 해당 연계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③ 연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졸업전까지 포기기간에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(SU-WINGs)를 통해 신청 한다. 연계전공 중도 포기자의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며,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.
- ④ 제1전공의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, 연계전공은 36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운영 및 관리)

- ① 연계전공 주임교수는 해당 연계전공의 제반사항을 관리운영 하고, 연계전공과 관련된 행정사항(졸업사정, 학위수여 등)은 원 소속 학과에서 담당한다.
- ② 연계전공 이수 인원은 참여 학부(학과, 전공)의 전임교원 수, 강의실(실험실습실)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"전공별 연계전공운영위원회"에서 결정한다.

제11조 (학위수여)

- ①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2개의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.
- ② 연계전공 신청자 중 연계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2조 (기타) 본 운영 지침에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.